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8. 1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 2008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08. 11. 26 ~ 12. 2 ( 기간 중 5일간 )

##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사무보조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래, 박남오, 박정자, 신홍식, 윤준용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8.11.26(수)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주민생활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및 청취</li> <li>- 서류확인</li> <li>- 개별감사</li> <li>- 현장확인</li> </ul>
2008.11.27(목)			도시환경국	
2008.11.28(금)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포함)	
2008.12.1(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2008.12. 22(화)	오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오후	공개질의 및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평가</li> <li>- 강평</li> </ul>	

※ 토·일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09년도 예산 사전 심사

## 6. 감사 방법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부위원장은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 7. 시정 및 지적사항 : 46건 (별첨)

#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08. 11.26	김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부서의 개인초과근무 내역 수기대장과 전산장부 대장과의 불일치(수기대장에는 초과근무, 전산 상에는 초과근무 내역 없음) 하고, 출장명령부상 출장업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월 초과근무수당 지급결의 결재시 초과근무 개인별 내역 확인 절차 및 이상 유무 확인 후 지급할 것.</li> <li>○ 출장명령부 상 출장업무 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기록할 것 (예-“체육회 지원 업무”를 →체육회 월례회의 안전 조율을 위한 업무 조정” 등으로 상세히 기록할 것)</li> </ul>
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별 출장여비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에 있어 현금 지급하는 부서와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부서별 지급 형태가 서로 상이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별 시간외 수당, 출장명령부 등 관련 서류 형식 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해 검토 후 통일된 지급 방법을 강구할 것.</li> </ul>
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수거 용기 옆에 폐비닐 수거 용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에 이물질 투입은 감소하였으나 폐비닐 수거용기가 넘치거나 뚜껑이 없어 고양이 등 동물에 의한 2차적인 오염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비닐 수거용기를 뚜껑 개폐가 용이한 폐달식 밀폐용기로서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도시미관이나 새로운 환경오염으로부터의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li> </ul>
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 지원센터 내 사회복지사 1인이 상담업무를 맡아 노숙인 재화를 돕고 있으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사유로 잦은 교체가 이뤄지고 있어 상담업무의 공백 및 연속성에 문제 발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부서에서는 상담사에 대한 근무여건과 환경 등을 개선하여 상담인력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할 것.</li> </ul>

5	11. 26	김기중	<p>○ 구 위탁 사회복지시설에서 고객 만족도나 운영 방안에 대한 설문 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결과를 담당부서에 보고하지 않아 위탁운영에 대한 구민만족 도 파악이 어렵고 재위탁 시 심사 자료로 활용이 불가함.</p>	<p>○ 위탁기관에서 자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고 담당부서에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여 자료를 관리할 것 이며, 담당부서에서는 구의회 업무 보고 시 결과내용을 보고할 것. 또한 위탁 기간 중 구 자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재 위탁 심사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p>																								
6	"	박남오	<p>○ 영등포동 618-257호 상의 위반건 축물을(점포 12.32㎡, 화장실 6.0㎡) 형식적으로 철거하는 등 행정처리 를 소홀히 하였음</p>	<p>○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철거하지 말고 건물이 소실될 때 까지 완전히 철거토록 할 것이며, 만약, 철거를 못 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공부에 “위법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에 철거를 기하기 바람.</p>																								
7	"	박정자	<p>(단위 : 대, 천원)</p> <table border="1" data-bbox="424 1370 938 1727"> <thead> <tr> <th>연번</th> <th>CCTV 구입내역</th> <th>구입 대수</th> <th>소요예산</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총계</td> <td>248</td> <td>4,042,192</td> </tr> <tr> <td>1</td> <td>방 범 용</td> <td>95</td> <td>1,252,500</td> </tr> <tr> <td>2</td> <td>무단투기</td> <td>15</td> <td>101,985</td> </tr> <tr> <td>3</td> <td>주차단속</td> <td>80</td> <td>2,066,293</td> </tr> <tr> <td>4</td> <td>그린과킹</td> <td>58</td> <td>621,414</td> </tr> </tbody> </table> <p>○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CCTV의 성능저하로 관독의 어려움과 단속의지 결여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운영 및 관리 실적이 저조함.</p>	연번	CCTV 구입내역	구입 대수	소요예산	총계		248	4,042,192	1	방 범 용	95	1,252,500	2	무단투기	15	101,985	3	주차단속	80	2,066,293	4	그린과킹	58	621,414	<p>○ 당초 CCTV 구입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관련부서에서 단속의지를 가지고 구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고, 또한 단속장비 구입 시 신중을 기해서 물품을 구입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CCTV 운영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p>
연번	CCTV 구입내역	구입 대수	소요예산																									
총계		248	4,042,192																									
1	방 범 용	95	1,252,500																									
2	무단투기	15	101,985																									
3	주차단속	80	2,066,293																									
4	그린과킹	58	621,414																									

8	11.26	송수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사용 관리대장을 비치 사용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 하여야 하나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관리대장 기록 미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거나 매달 사용하고 있는 유류비 사용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대장 기록관리가 부실하며, 또한 사용내역 기재 시 구체적인 내역이 없이 상호만 기재되어 있어 신용 카드 사용 및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이 요구됨.</li> <li>○ 사회복지과에서 구 종합복지관 지도 점검 시(2008. 12월 중)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함.</li> </ul>
9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 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구인, 구직을 원하는 사람과 회사와의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 구직 게시판 관리가 미흡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구내 구인, 구직을 원하는 자 에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li> <li>- 취업교실(강의 가능한 강사 보장 등)개설 요망</li> <li>-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한 교육 기관 알선 등</li> <li>- 소규모 취업 구인, 구직자와의 만남 개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외 소규모)</li> <li>- 근로자 수가 많은 관내 기업을 특별 관리 (구직 신청 횟수가 많은 기업도 관리 요망)</li> <li>○ 또한 구청 홈페이지 취업정보센 터의 구인·구직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접속 시 로그인 인증 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망.</li> </ul>

10	11.26	송수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13개 청소년 독서실 중 일부 독서실은 이용자수 대비 효율성 저하, 시설 미비, 이용실적 미비 등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와 위탁기관에서는 분석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에서는 전문가가 만든 설문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부서에서는 최단 시일 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독서실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li> </ul>
11	11.27	김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약자 중(의사표시 무능력자) 애수당, 기초생활급여에 대해 실제 수령 및 사용여부 확인에 허점이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사표시 무능력자의 분류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령 및 사용여부 파악이 안 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수령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고 대상자 중 의사 표시 무능력자는 별도 파악 관리하여 안전하게 급여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게 방안 강구할 것.</li> </ul>
1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수급자 실태파악을 위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기별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은 반기1회, 해외 입·출국에 대한 내용은 파악되기 어려워 수급자의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정 수급자 발생 등의 여지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도로 볼 때 상시 관리는 어려운 실정임.</li> <li>○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관리공단 등과 연계하여 수급대상자의 재산변동에(수입변동) 따른 갱신이 실제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li> </ul>
13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 불이행 정화조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는 취해지고 있으나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시 장기간 정화조 청소가 시행되지 않아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 불이행 정화조를 파악, 강력한 행정지도로 청소를 유도하고 그래도 청소가 시행되지 않는 정화조에 대한 청소 대책을 강구할 것. 예) 구청 선 조치 후 청소비를 건물주에 부과 회수하는 방법 등</li> </ul>

14	11.27	김종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근거는 무허가 건물 최초 발생년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항측에 의해 발견된 연도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사례가 있음.</li> <li>○ 또한, 현재도 최근 항측에 의해 발견된 연도의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경우도 있어 과도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행강제금 산출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액 조사 시 무허가건물 최초 신축년도를 정확하게 확인 하여(무허가건물대장 확인 및 서울시 항측 판독 의뢰)산출 및 부과하기 바람.</li> </ul>
15	"	박남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동 618-264외 2필지(주차대수 8대),</li> <li>○ 영등포동 618-218외 2필지 (주차대수 6대분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li> <li>○ 영등포동 4가 128번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li> <li>○ 영등포동 3가 7-17(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지번 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li> </ul>
16	"	박정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11. 26일 현재 453가구에 549명이 국적을 취득(특히 한국계 중국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으나, 수급자 대부분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매년 예산 증가와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가 수급자 자격상실 사유중인 하나인 “외국에서 3월 이상 체류한 자”의 규정을 역이용하여 계속하여 보호를 받고 있음 (예: 출국했던 수급자가 3개월 도래하기 전에 다시 입국하였다가 다시 재 출국)</li> <li>○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요구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위 사항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li> </ul>

17	11.27	박정자	○ 200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신청자는 52가구이나 47가구가 대출을 받았고, 저소득 전세용 자금 신청자는 477가구가 신청 하였으나, 10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어 신청대비 수혜 가구가 적음.	○ 현 지원 신청자 중에는 요건 불충 분으로(담보물건 부재 등)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판단 되지만, 구청장 방침 또는 신용보 증기금이 보증하게 하는 등 대출 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요즘 경제 추세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아서 현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강구하기 바람.
18	"	최미경	○ 과태료 부과를 동일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과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행정낭비를 초래 하였음.	○ 과태료가 이중으로 부과되어 민원 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정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19	11.28	김기중	○ 시설관리공단 창설 3년이 지난 지금 민간견인업체와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량 업무가 아직까지 완전히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한 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1대가 방치하고 있음.	○ 민간견인업체에 위임되어 있는 견인차량 업무를 점차적으로 시설 관리공단으로 이관토록하고, 또한 공단에 방치하고 있는 견인차량 1 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방안을 강구하여 활용하기 바람.
20	"	"	○ 관내 구립 보육시설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적정수의 투척식 소화기가 비치되었으나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는 투척식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관내 모든 시설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법규에서 정한 규정대로 투척식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조치 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21	"	"	○ 공원조성 시 식재된 수목이 고사 되어 재 식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하자보수 빈도가 높음.	○ 수목식재 공사발주 시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하자보수 빈도가 적은 우수 시공업체 중심으로 선정되어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기준 등을 강화할 것.

22	11.28	김종태	<p>○ 우리 구 관내 총 23개의 공영노외 주차장 중 수익성이 없는 유료주차장 6개소의 월 평균 적자액이 12,311천원으로, 연간 147,732천원의 적자가 매년 예상됨.</p>	<p>○ 적자 운영 중인 6개소의 주차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대책 등을 수립할 경우 연간 147,732천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매년 예상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p> <p>대책 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에게 무료개방하거나 월 정기이용 주차장으로 사용 등</li> <li>- 차량의 파손 등 분쟁에 대비 주차장 내 CCTV 설치 등</li> </ul>
23	"	"	<p>○ 우리 구 관내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나 심야시간대에는 이용률 저조로 수입금 대비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됨.</p>	<p>○ 심야시간대(22:00~익일 06시)에 주차장 무료 개방 시 인건비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매년 예상됨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개방 이후 출차하는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 방안 검토</li> <li>- 차량의 파손 등 분쟁에 대비 주차장 내 CCTV 설치하여 가해차량 확인 등</li> </ul> <p>※ 예산절감액(년간) : 월 31,924천원×12월=383,088천원</p>
24	"	박정자	<p>○ 체납 추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2008년 10월 현재 1,047,478건에 423억6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징수를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p> <p>※ 체납현황 : 총 1,047,478건 42,36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년도 : 75,932건 3,117백만원</li> <li>- 과년도 : 971,546건 39,249백만원</li> </ul>	<p>○ 체납자의 주소지를 추적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나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과태료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징수를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p>

25	11.28	신홍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구연한 9년인 매연측정기를 구매하여 시용함에 있어 기기 문제로 고장 발생 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고 중요부분 고장 시에는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li> <li>○ 2005년 신규 취득한 매연측정기(취득가 1,500만원)의 경우 유상으로 4회 수리[(2006년 4월, 2006년 9월, 2007년 1월, 2007년 4월)하여 총 152만원 소요됨]하였음에도 현재 사용을 못하고 방치하고 있음.</li> <li>○ 내구연한 미 경과된 매연측정기가 기기고장으로 사용불능 상태가 되자 2007년, 2008년 각 대씩 2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제품 구매한 기기가 문제 발생하여 사용 불가 시 수리보다는 업체에 하자 및 제품의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여 적극 교환을 요구하여 물품 취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li> </ul>
2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경비 지출 시에는 원인행위에 대한 지출서류를 작성하고 담당자 및 관리자의 날인을 받아 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li> <li>○ 도시계획과 업무의 집행관련 서류철인 일상경비 출납계산서철의 지급·지출결의서에는 원인행위별 담당자 날인 없이 서류 편철되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 규정에 의하여 날인하도록 하고 원인행위 지출서류 작성 시 담당자 날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li> </ul>
2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매점을 폐쇄 후 자판기가 설치된 휴게실이 있으나 의자 미설치 등 삭막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휴게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구민이 다수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내부환경을 밝고 휴게기능이 가능한 시설로 개선토록 하고, 또한 문화원 주변에 설치된 의자에는 노숙자 등이 눕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설치하여 다수가 이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li> </ul>

28	11.28	신흥식	○ 문화예술회관의 건물관리자 중 현 근무자가 방화관리자격증 소지자임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용역을 주면서 매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매월 40만원×12월=480만원)	○ 문화예술회관 건물에 대해 방화관리자 용역을 현 근무자 중에서 방화관리자격증을 가진 직원에게 매월 적정선의 수당을 지급하여 방화관리자로 임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물관리자 근무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29	"	송수희	○ 영등포 아트홀 전시실 내 CCTV 부재, 안내 데스크 등 시설미비하고 또한 전시실에 대한 분명한 사용목적이 정해지지 않고 있음.	○ 아트홀(전시실)의 운영방향 종합 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고, ○ 또한 민방위 교육대여 장소비로 3천만원 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시실을 민방위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0	"	"	○ 대림도서관 일일 평균 이용자 약 450명, 일일 대출 반납 350건 이상 발생하는데도, 담당 직원은 사서 업무 외에 다른 업무 과중으로 업무 능률 저하, 안전사고 우려가 예상됨.	○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고, CCTV 추가 설치, 공공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사서는 사서직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할 것.
31	"	윤준용	○ 신길동 262-60호, 신길동 262-61호의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점포로 사용하고 있는 등 무허가 건물 관리에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음.	○ 위 지번에 있는 건물은 무단으로 증축하여 신고 없이 점포를 확장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화조 용량 확인과 식품위생업 등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 바람.
32	12. 1	김기중	○ 영등포본동 대우푸르지오APT 중앙도로는 구도로로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와 이로 인한 어린이 안전문제 등으로 아파트 입주자, 부녀회에서 도로 중앙에 화분을 설치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 및 불법설치물로 인한 사고 시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아파트주민 측과 인근 주민사이 상충된 민원 사항으로 도로 중앙에 적법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 조치를 강구하고 불법 설치물 (화분)을 자진 철거케 하고 주차 단속용 CCTV 치 문제를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고 설치 전까지는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하여 근절토록 할 것.

33	12. 1	김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도로 개설로 보행자 안전 확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개선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이 사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소홀로 유명무실하며 오히려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도로 개설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것.</li> </ul>
34	"	박남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림3동 667-10의 불법 골프장을 적발하고도 주택과, 건축과가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부과하고 있는 상태임.</li> <li>○ 영등포구 문래동 3가 2(10.60㎡)호에 대해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 강제이행금 미 부과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로 축조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조치</li> <li>○ 미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바람.</li> </ul>
35	"	송수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광고물 단속의 날(화, 목요일)을 정하고 지정 단속 시에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장기적인 불법광고물 단속 효과가 없음, 또한 안마, 마사지 영업은 신고제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더라도 부과 대상에 대한 정보조회가 불가능하고 세무서와도 정보조회에 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는 지역을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것. 또한 단속과 관련된 용역 등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과태료 독촉은 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과태료 과징에 철저를 기할 것.</li> </ul>
3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의회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는데도 탈의실, 휴식 공간이 없어 근무의 어려움이 많고,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마련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전의원에게 홍보를 하지 않아 교육 참가율이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의회 사무국에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탈의실, 휴게실로 사용토록 하고,</li> <li>○ 국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수 프로그램을 전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철저 할 것.</li> </ul>

37	12. 1	윤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문화과에서 단속하여 위탁업체가 견인하고 있는 견인업무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의 위반에 대한 견인 업무가 같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장소에 따라 견인 부서가 달라 주민들을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문화과와 시설관리공단의 단속과 견인업무를 총괄 통합 하여 일관된 업무 처리로 주민의 혼란과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li> </ul>
3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 부결 사유와 관계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광고물 심의에 상정함으로써 관계 민원인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상 광고물 허가와 관련된 심의를 할 시에는 정확한 법령을 숙지하여 검토한 후 안건을 상정토록 하여 심의위원들이 정확한 자료로 판단하거나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람.</li> </ul>
39	"	최미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등포구 보육조례 제9조 제5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 에도 구립보육시설 재 위탁 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립보육시설 위탁 심사 시에는 보육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철저히 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바람.</li> </ul>
4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단체와 사업내용을 심사한 후 지원하여야 함에도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단체 보금 지원 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와 보조금 지원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세심히 확인하여 지원되도록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li> </ul>

41	12. 2	박남오	○ 영등포동 618-265호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일부 미 부과 하였음.	○ 영등포동 618-265호에 대한 위반건축물 철거 조치 및 미부과한 강제이행금을 부과 조치 할 것.
42	12. 2	박정자	○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6호를 보면 “장애인(장애인 수첩을 소지한자가)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세부적인 제한조항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할인대상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바람. 예)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 7호가항 :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자.
43	"	신흥식	○ 게임장, 노래방 등 지도대상 사업장이 440개소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도 관련 부서에서는 단속인원 및 예산편성도 없는 실정이고, 또한 관련기관과 합동단속 등 단속의지가 결여된 상태임.	○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구청, 소방서, 경찰서, 민간단체(청소년 지도협의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인원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할 것.
44	"	"	○ 외주업체와 계약 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는바, 청소과에서는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체결 시(11개업체)갑.을 상호간 날인 없이 계약을 하였음.	○ 계약서는 갑·을 상호간 날인하여 있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므로 모든 계약서류를 확인, 보안하여 정식적인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고, ○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45	"	윤준용	○ 관급공사 건축비 중 안전관리비 등 부대공사비의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평당 건축비의 상승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음.	○ 관급공사 건축비 중 부대공사비 비율이 높고, 평당 대비 마감재 비율은 낮음으로 마감 내장재의 부실이 우려됨으로 현실에 맞는 건축비율로 재검토하기 바람.

46	"	최미경	<p>○ 대신시장 ~ 해군회관 구간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골재 포석 후 다짐작업이 미흡하고 가로수가 보도가까이에 식재되어 있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p>	<p>○ 골재 포석 후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여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할 것이며, 가로수 식재 위치 변경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도로 개설 공사에 철저를 기할 것.</p>
----	---	-----	--	---